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운송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0 신설)
- 국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

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
항제2호·제3호)

II. 검토의견

1. 유가보조금 지원(안 제50조제5항 등)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사업은 유류세연동 보조금¹⁾과 유가연동 보조금²⁾으로 구성되고, 「지방세법」 제135조³⁾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 주행세’)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자동차 주행세는 국토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여 지자체별로 안분⁴⁾하며, 지자체별로 안분받은 예산을 집행함.

- 1) 2001년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기본 보조금
 $\{ \text{지급액(원/ℓ)} = \text{현재 유류세(교육세 포함)} - 2001.6.30. \text{ 기준 유류세}(183.21\text{원}) \}$
- 2) 유가 급등 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보조금
 $\{ \text{지급단가} = \{ (\text{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text{기준가격}(1,700\text{원})) / 2 \}$
- 3) 제135조(납세의무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이 장 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 4)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25일까지 이 장 제1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세의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및 군(이하 이 절에서 “시·군”이라 한다)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 결산세액으로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액의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9,830억원	×	$\frac{\text{해당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text{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 연도의 법 제10장제1절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세액}}$
12		
2. 해당 월의 자동차세 징수총액에서 (9,830억원/12)을 뺀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월분의 시·군별 유류세 보조금

개정안 제50조제5항제3호는 자원안보위기 정보가 발령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구매한 유류 구매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자원안보위기 정보 발령 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며 국가재정을 투입하려는 취지이나, 「지방세법」 상 유가보조금 세원이 지방세로 명시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중앙정부)를 지원 주체로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상 충돌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보조금법」 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서 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을 제외⁵⁾하는 점,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주행세(유가보조금) 집행차액(보조금 교부 이후 남은 금액) 또한 6,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국비 지원의 시급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3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사 업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동차 주행세(유가보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세입(A)	세출내역			집행차액 (A-B)	자동차 주행세율 (%)
		계(B)	자동차 보유세 인하 세수보전액	유류세 연동보조금 +유가 연동보조금		
2023년	28,118	21,400	9,830	11,570	6,718	26
2024년	29,613	22,750	9,830	12,920	6,863	26
2025년	34,286	27,569	9,830	17,739	6,717	26

출처 : 국토교통부

※ 울산시(정유사 소재 9개 시·군(울산, 순천, 포항, 인천 등)에서 징수한 후 울산시로 송금)가 세입을 총괄 수령하여, 매월 전국 시·군에 배분

참고로, 기획예산처는 개정안과 같이 유가보조금의 지원 주체에 중앙정부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의 재원에 국비를 추가하는 세출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 표와 같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가보조금 재원에 매년 집행차액이 발생하는 등 중앙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원 주체에서 국토부장관을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

[안 제50조제5항, 제51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 략) ⑤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u>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 략) ⑤ <u>국토교통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 시·도지사</u> -----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시·도지사</u> -----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 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 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기준·지급방법 및 지 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2조제1 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자동차 주행 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2항 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 항,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석 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부과금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 ----- -----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후단 삭제> 1. 유류(油類)에 부과되 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 는 금액 가. (현행 제1호 내용 과 같음) 나. (현행 제2호 내용 과 같음) 2. 제20조의3제1항에 따 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 노선을 운행하기 위하 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 법」 제23조에 따른 자 원안보위기 경보가 발 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 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 ----- ----- ----- ----- ----- --. <후단 삭제> 1. 유류(油類)에 부과되 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 는 금액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	--	---

지급정지)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u>	지급정지) <u>국토교통부장관(제50조제5항제3호의 보조금만 해당하는 다), 시·도지사</u> -----	지급정지) <u>시·도지사</u> -----
	-----	-----
	-----	-----
	-----	-----
	-----	-----
	-----	-----
	-----	-----
	-----	-----

2.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안 제49조의20)

개정안 제49조의20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① 여객의 공정한 배정, ②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③ 서비스 요금 조정, ④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제85조제1항제22호에서 노선폐지, 감차, 영업정지,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3종류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②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③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중 유일하게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규정이 없어 시정요구가 어렵다는 문제에서 규정을 도입하는 취지이나, 다른 사업자들은 사업자별 준수사항(플랫폼운송사업의 준수사항⁶⁾, 플랫폼가맹사업

6)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의 준수사항⁷⁾)을 규정하여 수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준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을 개선명령하는 경우 ‘공정한 배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즉, 개정안과 같이 개선명령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의무 기준부터 설정한 후에 개선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가 ①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②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음.

그 밖에 개정안 제49조의20 제4호는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한 조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플랫폼중개사업을 ‘여객운송 중개’로 정의한 제49조의2 제3호⁸⁾의 사업 범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7)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정합성을 고려하여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분을 삭제함.

[안 제49조의20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	<u><신 설></u>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u><신 설></u>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 -----

- 8)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u>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u> <u>1.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u> <u>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u> <u>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거나 그 외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u> <u>4. 사업계획의 변경</u> <u>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	----- ----- ----- ----- -----. <u>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 행위의 시정</u> <u>2. (개정안과 같음)</u> <u>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u> <u>4. (개정안과 같음)</u> <u>5. (개정안과 같음)</u>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